



FTA 기업의 전자적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Establish the Foundation of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for the FTA Enterprise

저자 (Authors)	심종석, 오현석 Chong-seok Shim, Hyon-sok Oh
출처 (Source)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9(4) , 2009.12, 1-19 (19 pages) The Journal of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9(4) , 2009.12, 1-19 (19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Korea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361756
APA Style	심종석, 오현석 (2009). FTA 기업의 전자적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고찰. 인터넷 전자상거래연구, 9(4), 1-19.
이용정보 (Accessed)	대구대학교 203.207.31.89 2015/11/26 12:5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FTA 기업의 전자적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Establish the Foundation of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for the FTA Enterprise

심 종 석* · 오 현 석**

Chong-seok Shim · Hyon-sok Oh

• 목 차 •

- | | |
|--------------------------|-----------------------|
| I. 서 론 | III. e-C/O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 II. e-C/O 관리시스템의 배경 및 현황 | IV. 요약 및 결론 |
| | 참고문헌 |
-

... Abstract ...

Though FTA exporters can apply electronic for certificates of origin(i.e. e-C/O), in some countries documents still have to be physically stamped, posted back to, couriered or collected by the exporter before the certificate can be obtained. This process can take hours, sometimes days. Basically certificates of origin are essential for exporting companies to comply with customs requirements in the importing state, as well as meeting banking and other commercial criteria. Customs issue and attest certificates of origin and other trade documents, a role that is vital to the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trade, especially in an increasingly differentiated rule-of-origin trading environment that lacks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tandards. e-C/O is the next step in exporter aim of making the production of export documentation a completely paperless process. Not only are there benefits to exporters in terms of speed; application process has been reduced to a matter of hours, simplicity; in completion of the form and delivery to the exporter and cost avings; in presenting the form to the couriers, post, staff time further more ease-of-use, there are also benefits to their customers through greater efficiency, better responsiveness and improved customer care.

Key Words: FTA Exporters,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e-C/O, Trade Document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전임강사(경영학박사 · 법학박사), 주저자

** 영진사이버대학 경영학과 조교수(경영학박사), 교신저자

I. 서론

‘전자원산지증명서’(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 이하 ‘e-C/O’)라고 함은 현행 종이문서에 기반(paper based document)한 서류문서를 대신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시스템(electronic processing system : 이하 ‘IPS’)을 통해 전송된 전자문서(electronic message)를 상대국가 확인기관, 예컨대 상대국 수권은행 또는 통관 시 관할세관 등에서 동일하게 인정하는 화환취결시의 부속서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4479호, 1991.12.13. 2009.01.30부 현행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9705호)로 법령 및 전면개정]에 의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C/O의 EDI 발급을 시작하였으나, 현재 e-C/O는 기본적으로 국제적 유통은 불가능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당해 문제점은 교역 상대국과의 IPS간 연계 및 상호 인정을 위한 협의가 부재한 이유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당사국에서는 무역업무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자국 실정법의 기반 하에 e-C/O를 발급하고 있는 차제에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그간 전방위적으로 FTA 체결에 대한 고도의 집중력을 제고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이는 금명간 FTA 체결국 증가로 특혜관세 원산지증명하의 수출·입이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곧 현재 14개국과 체결된 FTA가 발효 중에 있으며, 45개국과는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2010년 이후에는 교역물품의 80% 이상이 특혜 원산지증명 하에서의 수출·입 거래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사실은 당해 시사점의 실질적 예표로 간주할 수 있다.

결국 FTA 체결효과가 실질적인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으로 내부화되기 위해서는 FTA의 효과적·효율적 이행 및 활용이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활용준비 상태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에 놓여있음이 현실이다.

논제에 결부하여 대부분의 수출·입 기업에서는 원산지규정이 협정별로 복잡·다양하고, 그 증명방법 및 준비서류 구비 등 또한 매우 복잡하고 따르기 힘든 절차로 인식하고 있음이 통례인 바,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활용시스템이 긴요한 실정이다.

당해 배경은 무역협회(2008)의 설문조사로부터 극명히 추론가능한데, 그 주요 골자는 i) FTA 특혜관세 활용여부에 대해 80% 이상이 활용하지 못하고, 활용하고 있는 업체는 19%에 불과한 실정이며, ii)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FTA 체결상황이나 활용방법·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및 원산지 증명에 소요되는 상당한 비용에 대한 부담, iii) 수출업체의 경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전문부서나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것 등이다.

이에 반하여 대부분의 FTA 협정문에서는 상대국 수혜품목에 대하여 엄격한 원산지검증의무¹⁾를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의 경우 최근 보호무역주의 추세와 맞물려 특정 품목에 대하여 FTA 체결 상대국에 엄격한 원산지 검증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차제에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환경 하에서 기발효된 FTA 14개국과 미국 및 EU FTA, 인도 CEPA 타결에 대비 우리 기업들의 FTA 원산지 관리부담을 줄이고 FTA 활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무역기반시스템 구축에 대한 당위에 기하여, FTA 혜택의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그간의 FTA별 복잡·다양한 원산지결정요건의 충족관리, 증명관리, 입증서류 구비 및 유통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에 있어 고려 및/또는 수용할 수 있는 일말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e-C/O 관리시스템의 배경 및 현황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앞서 적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FTA 수혜기업의 준비미흡 내지 기반 인프라의 비구조화는 수입상대국의 통관심사 강화, 까다로운 검증절차 적용 등 중대한 통상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농후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효율적인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에게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업에 이르기까지 원산지입증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한 준비가 긴요할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 원산지 증거서류로는 수출신고수리필증, 송품장, 원산지통보서, 부품명세서 및 부품 구입증빙서류 등이 있다.

추진배경에 기하여 FTA 이행준비에 따른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그 하나는 국내 수입업체 등이 FTA 특혜관세를 잘못 적용한 것에 따른 세관추징액이 지난 3년간 100억원이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곧 FTA 발효국가의 확대에 따른 협상물량의 증가로 추정세액이 2007년 기준 19억, 2008년의 경우 약 110억원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특혜신청오류(53%), 특혜신청서류요건위반(39%),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5%), 우회수입오류(3%) 등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 EU 등 교역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와의 체결 시 관세특혜의 수혜 폭이 커지는 만큼 이에 따른 원산지 조사 및 관리가 늘어나 협정관세 적용과 관

1) 수출·입지의 원산지 입증책임, 현지검증제도, 원산지허위증명 처벌강화, 자료보관의무 등.

련한 세관과 납세지, 수출·입자 간 갈등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곧 미국은 FTA 발효 초기에 상대국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증명 및 검증을 철저히 실시하여 왔으며, 특히 섬유산업의 경우 지속적인 집중 심사대상으로 분류, 섬유검증팀을 운영하고 이에 철저한 원산지 관리와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는 차제에 있다.

따라서 FTA 기업의 원산지관리 부담을 줄이고 FTA 활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무역기반시스템 구축은 FTA 기업의 관점에서 매우 긴급하고도 시의적절한 문제라 할 것이다.

2. 기대효과

1) 정성적 기대효과

(1) FTA 특혜관세 효과적·효율적 의무이행 및 활용률 제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산지 관리의 복잡·다양성, 정보부족 등으로 인한 FTA 특혜관세 이용 저조 부분에 대한 활용률 증대효과가 기대된다. 이를테면 수출자가 원재료의 원산지 입증자료를 구비하기가 어려우거나 절차 등을 파악하지 못하여 FTA 특혜수출을 포기하거나 유보하는 경우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수출자로 하여금 원산지 관정을 신속·용이하게 할 수 있고, 달리 투명한 원산지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조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곧 우회수출 및 원산지 부정발급 방지의 실현으로 세이프가드, 수입제한 등으로 인한 업계의 선의의 피해방지, FTA 상대국 실사를 대비한 검증자료 확보의 실효를 제고할 수 있다.

(2) 국내 산업의 부가가치 극대화

수출물품 통관기간의 단축 실현에 따른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관세절감을 통한 원가 경쟁력 강화 및 시장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례로 중국 및 기타 국가의 우회수출방지 효과 및 국내 생산시설 가동률 증가, 수출증대 이익의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은 영업 및 마케팅 자료로의 활용 및 관계 정부부처에는 효과적인 FTA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확보의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3) 원산지관리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

수출빈도가 높은 수출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작성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FTA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지표를 참조할 경우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행정비용은 매년적분 가치의 2-6%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는 바, 이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개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KIEP, 2008).

2) 정량적 기대효과

한-미 FTA 및 한-EU FTA 규정에 따른 특혜 원산지증명 활용률을 10%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연간 12.09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KTNET, 2009), 그 세부 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FTA 활용률 증가에 따른 경제효과

단위 : 억 달러

구분	산정요소	산정근거	경제효과
한-미 FTA	수출가격 경쟁효과	대미수출금액(464억불) × 미산업평균관세율(3.60%) × 원산지 활용증가율(10% 가정)	1.7
	수입원가 절감효과	대미수입금액(384억불) × 국내평균관세율(8%) × 원산지 활용증가율(10% 가정)	3.1
	원산지발급 부대비용	수출금액의 0.2%	0.9
	소 계		5.7
한-EU FTA	수출가격 경쟁효과	EU수출금액(560억불) × EU산업평균관세율(4.20%) × 원산지 활용증가율(10% 가정)	2.4
	수입원가 절감효과	EU수입금액(368억불) × 국내평균관세율(8%) × 원산지 활용증가율(10% 가정)	2.9
	원산지발급 부대비용	수출금액의 0.2%	1.1
	소 계		6.4
합 계			12.09

3.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체결된 FTA 특혜관세 국가와의 수출·입 활용현황은 다음 <표 2>와 같은데(KIEP, 2008), 통상 선진국이 체결한 FTA 활용률의 만족할 만한 수준을 통상 60~70% 정도라 간주할 때(NAFTA의 경우) 국내는 아직 그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FTA 특혜관세는 당사국간 협정에서 정하는 FTA 특혜 원산지규정(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물품만 특혜관세의 혜택을 누림) 충족 및 엄격성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절차가 매우 복잡·다양한 특징이 있다. <표 3> 참조(KTNET, 2009).

<표 2> 현재 체결된 FTA 특혜관세 국가와의 수출·입 활용현황

구분	교역비중	수입	수출	비고
ASEAN	7.28%	27.0%	14.4%	
싱가폴	2.58%	29.8%	-%	싱가폴은 무관세국가이며, 중계무역 국가로 활용률 측정이 무의미.
EFTA	0.64%	42.5%	-%	EFTA측의 자료수집 한계로 분석에 제한.
칠레	1.0%	90.5%	93.0%	수출금액 비중이 높은 가공광물(99.4%), 운송 기계(99.4%) 활용률 증가에 기인.

<표 3> 원산지 검증방법과 역외가공의 수준

구분	내용	방법	대상국가
원산지 검증 방법	원산지증명 발급방식	자율발급	칠레, EFTA, 미국
		기관발급	싱가폴, ASEAN
	원산지 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	각 대상국별/품목별 혼재 및 상이 - 국가별 통일된 원산지 규격 품목(개) - 국가별 각기 다른 원산지 기준 품목(293개) - 3개 이상의 상이한 원산지 기준 품목(3,961개)
		실질변형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 공정기준)	
	원산지 검증방법	직접검증	칠레, 싱가포르, 미국
		간접검증	EFTA
		혼합검증	ASEAN(先 간접, 後 직접 검증)
	원산지 기록유지	5년 이상 보관	칠레, 싱가포르, 미국
		3년 이상 보관	ASEAN, EFTA
역외 가공	개성공단 인정기준	한국산 불인정	칠레
		한국산 인정	싱가폴(4,265 품목) EFTA(267품목) - 한국산 원자재 60% 이상 ASEAN(100품목) - 한국산 원자재 60% 이상 미국 - 역외가공 지역 별도 지정

한편 원산지 입증서류관리 및 절차에 있어서는, 곧 원산지관리 입증서류의 발급·보관·검증 프로세스는 체결 국가별/품목별호 혼재되어 있으며, 이는 자율관리업체/일반업체로 구분되어 있다.

실례로 발급첨부서류는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이며, 입증서류는 원산지통보서 등, 세번변경기준 시에는 공정내역서, 원재료내역서, 부품구입증명서 자료(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거래명세서 등), BOM 등, 부가가치 기준시에는 원

산지별 원재료사용 및 가격관련 입증서류(노무비, 경비 및 이윤 등의 개략적인 신고서) 등이다.

4. 문제점 분석 및 평가

1) 기업의 활용현황 및 문제점

FTA에 대한 활용현황은 높은 편이나, 많은 기업에서 한국에서 생산되어 수출하면 당연히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등 원산지기준 정보습득 및 구체적인 활용준비는 대체로 미흡한 실정이다.

실례로 관세청(2008)에 의하면 중소기업체의 FTA 활용의지는 65%로 높은 편이나, FTA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비는 76%에 상당하는 업체가 구체적인 대응태세를 견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추계되어 있고, 자사 수출품이 협정품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세율인지도 또한 84%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자사 수출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기준 및 원산지 입증절차에 대한 이해여부는 89%가 마찬가지로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2) 우리 기업들의 활용 사례

(1) 자동차 산업

완성차업체(대기업)는 대부분 시스템 구축 중이거나 또는 기 종료한 상태이나, 엔진 관련 부품공급사와 매출 1천억 미만의 중소기업체는 시스템 구축비용 때문에 그 추진을 포기하거나 원산지 증명의 이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예컨대 현대자동차는 2008년 7월에 원산지 판정시스템을 구축을 완성하여 부품공급업체의 원산지 자료입력을 받고는 있으나, 300여개가 넘는 부품공급업체의 방대한 분량의 증명서류들의 보관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2) 전자산업

완성품업체(대기업)와 부품공급사간의 원산지 확인제도에 대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원산지 적용시행을 원하고는 있지만, 부품공급사의 원산지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LG전자는 현재 진행중이나 부품업체 참여가 저조하여 그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3) 섬유산업

작물·봉제업체는 영세업체가 많고, 대형업체의 경우 대부분 중국·베트남·인도네

시아 등에 진출하여 한국에는 다만 시제품 생산에 그치고 있음이 대부분인 바,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KTNET, 2009).

3) 외국의 원산지 관리사례 및 시사점

외국의 사례나 관행은 우리 수출업체에게 있어서는 잠재적 위협요소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체계적인 원산지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나아가 우리 중소기업들은 원산지 전담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우며, 원산지 적용오류에 따른 리스크 관리체계가 부실한 실정으로 원산지 관리의 복잡성으로 관세감면의 혜택을 포기하거나, 원산지 증명오류 등으로 인한 벌금 등 그 피해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NAFTA의 원산지 관리사례를 예시하면, 원산지 확인 부가서류(원자재 변형, 제품변경, 판매제품)의 제공, 보관의무(5년) 및 원산지 검증을 위한 서류제출 의무를 부가하고 있고, 또한 원산지 정보에 대한 자료 요구 시 즉각적인 보고의무를 병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미흡 시에는 수출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한편 NAFTA에서는 체계적인 원산지 확인판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산지 판정 내지 증명서의 즉시 발급 등 이를 통한 무역업체의 원산지 증명에 따른 부대비용의 절감 및/또는 오류 방지 등에 그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NAFTA에서는 해외 원산지관리 적용사례로 포워드 원산지 입증서류 보관 의무 위반에 대하여 4,100만불, Pioneer 원산지 규정충족 위반에 대하여 3,700만불의 벌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다(KTNET, 2009).

4) 기업의 요구사항 및 대비사항

FTA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정보습득 및 전담인력 배치, 원산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의 준비 및 활용, 원산지 입증서류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준비,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철저한 준비 및 대응시스템 구축, 상대국의 수출기업, 생산자 또는 수입자 소재의 정확한 파악이 요구된다.

아울러 FTA 혜택에 기하여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이행 및 활용확대를 위해서는 i) FTA 원산지 규정충족을 위한 정보제공(FTA 정보제공, 활용방법, 절차 등), ii)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입증자료의 생성 및 보관 등), iii) FTA 원산지 검증시스템(원산지 검증관리, 문서보관관리 등)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관리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구축비용의 부담, 전담인력의 부재 등으로 인해 이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업체 자체의

시스템 구축보다는 정부와 유관기관의 주도 하에 통합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e-C/O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1. e-C/O 관리시스템의 개요

첫째 e-C/O 관리시스템은 온전한 개념의 전자원산지증명서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는 바, 곧 국내에서 전자적으로 발급된 C/O도 해외 전송 시 재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함으로써 시간·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무역업계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그 실익을 부각할 수 있다. 아울러 발급프로세스만으로 프로세스를 국내외 절차로 확대함에 따라 무역업계의 e-C/O 활용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순기능적 역할이 기대된다.

둘째 수입통관 업무 프로세스 혁신에 일조할 수 있다. 이를테면 종이문서에 기반한 원산지증명서 업무로 인해 지연되는 통관소요시간을 e-C/O를 통해 절감이 가능하다.

셋째 국가 간 전자무역 확산의 촉매로서 그 순기능적 역할이 기대된다. 이를테면 C/O는 국가 간 유통되는 대표적인 무역문서로서 타 무역문서의 전자적 유통을 견인할 수 있는 매개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2. e-C/O의 실현가능성과 논의의 동향

e-C/O의 실현은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L) 등 전자문서의 국가간 교환기반을 마련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동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민간차원에서는 전자문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PKI 기반의 전자인증(공인인증)을 기반으로 민간 무역문서를 국가 간에 유통하여 활용하는 사업으로의 추진이 확대되고 있는 차제에 있다. 실제로 한-일, 한-대만 간에도 현대자동차, 두산 등이 참여하여 상업송장·포장명세서·중량명세서·선하증권 등의 정보를 실제로 전자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e-C/O는 타 무역절차에 비하여 그 구현이 대체로 용이하다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 곧 e-C/O의 구현은 수출국 발급기관과 수입국 확인기관 간에 전자문서 교환 프로세스로서 IPS 연계 시 수입국에 전송된 e-C/O에 대한 원본의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으로 요약된다. 또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e-C/O 구현 시 타 국가로의 확산 적용이 용이하다고 하는 부수적 실익을 기대할 수 있다.

국제 논의의 동향으로서 APEC에서는 2002년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e-C/O를 선도사업으로 채택하여 2004년 ‘APEC 역내 e-C/O 선도사업 구현계획’으로 최종 채택하였는 바, 이는 그간 우리나라의 e-C/O 관련 국제협력의 근간으로서 기능하였다. 그 기능의 주요 골자를 대별하여 살펴보면 이하 각 항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한-일 간 e-C/O 협력 논의

2003년 ‘제2차 한-일 서류없는 무역 민·관실무협의회’에서 일본 측은 e-C/O 구현 방안을 발표하였는 바, 우리 측은 시스템적인 측면 외에 양국 세관 등에서의 전자문서 인증 등 제도적인 문제가 중요함을 언급하고, 향후 그 구체적인 계획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후 2004년 제3차 동 협의회에서 양국 간 e-C/O 사안은 FTA체결 이후에 본격적 논의를 전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현재 양 당사국의 FTA 체결 지연으로 그 논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2) 한-싱가폴 간 e-C/O 협력 논의

2004년 APEC 전자상거래운영회의체(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 : 이하 ‘ECSG’) 9차 회의 시 한-싱가폴 공동으로 APEC 역내 e-C/O 구현계획 제안을 근거로 동년 한-싱가폴 FTA 협상결과 상호협력조항에 ‘서류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 사항을 포함하여(제18조 제7항), 실질적으로 e-C/O를 비롯한 전자무역문서의 교환을 양국의 협력사업으로 수용한 바 있다.

3) 한-대만 간 e-C/O 협력 논의

2004년 대만 국제무역국(BOFT) 초청으로 민·관 실무자(MOCIE·KITA·KTNET·KCCI 및 BOFT·TradeVan) 간 사전협의를 이루어졌는데, 초기사업으로 우리 측 e-C/O를 대만세관에서 인정하는 전자원산지증명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사업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배경으로서 e-C/O 시범사업은 우리나라가 대만 측에 먼저 제안한 사업으로 아시아 국가 중에는 싱가포르, 대만 등이 현실적으로 시범사업 추진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판단한 것에 기인한다.

2004년부터 ‘한-대만 간 e-C/O 시범사업’은 PAA(Pan Asia eCommerce Alliance)²⁾ 총회에 연례 보고되었으며, 이에 PAA는 APEC ECSG 회의의 PAA 공식옵저버로 선정되어, e-C/O 선도사업을 정기적으로 ECSG에 보고하고 있다.

2) PAA는 2000년 9월에 설립되었는데, 현재 12개 지역(한국·중국·일본·대만·홍콩·싱가폴·말레이시아·태국·마카오·호주·필리핀·인도네시아)의 전자무역사업자가 이에 가입하고 있다.

양국의 e-C/O 구축사업에 대한 주요 경과로서, 2005년 제1차 한-대만 전자무역협력 민·관 협의회를 통해 한국 측 e-C/O를 대만세관에 전송하는 서비스 구축에 합의하였고, 2006년 제2차 동 회의에서는 i) 양국 간 전자무역협력에 관한 민·관 MOU 체결 및 e-C/O 서비스 구현을 위한 세부계획, ii) 양국 간 e-C/O에 대하여 호혜주의의 원칙에 따른 상호 인정조건, iii) 한국 측 e-C/O를 대만세관에 전송하는 서비스 구축(우리 정부의 사업비 지원으로 구축)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업체의 수혜를 위해 전자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원산지 증명에 대만대표부의 직인요구 절차를 생략 가능하도록 대만 측에 요청하고 그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전개된 e-C/O 발급현황은 적잖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곧 현재 대만 관세청은 한국에서 들어오는 원산지증명서 중 위조·변조된 문서가 많기 때문에(총 제출문서 중 약 38%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 일부 품목(특히, 과일 등 농산물)의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에 주한 대표부의 날인을 직접 받아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내 관련 수출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세청의 경우 대만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3. 우리나라 특혜원산지 증명의 특징

1) 법·제도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관련 전체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역할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 확인과 수출물품 중 관세양허와 관련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일부를 지식경제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를 도해하면 다음 <표 4, 5>와 같다.

<표 4> 특혜 원산지증명의 절차

대외무역법	관세법
-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동 법 제37조, 시행령 제66조) - 확인 및 발급권한의 위탁 [시행령 제91조 제4항(세관) 제91조 제11항(상공회의소)에 위탁]	- 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검증업무 규정 (동 법 제229조, 제231-233조)
-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22호에 의거한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 관세양허 원산지증명 발급절차 규정 (관세청 고시 제2008-39호에 의거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표 5>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발급주체	기관발급	자율발급
내용	상공회의소, 세관발급	수출자 발급, 입증서류 보관
FTA 체결국	싱가폴, ASEAN, 인도	칠레, 미국, EFTA, EU
발급비중	40%	60%

2) 특혜원산지관리업무

FTA는 협정국 간에만 저관세율 및 무관세를 적용하는 배타적 무역체제로 특혜관세 혜택으로 인하여 일반 우너산지증명서에 비해 그 요건이 엄격하고 까다로운 조건하에서 발급·검증이 시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FTA별 복잡·다양한 원산지 결정요건의 충족관리, 증명관리, 원재료/중간재별 입증서류 등 구비 부담이 가중되어 그 지원이 필수불가결하다.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증명관리 절차를 도해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증명관리 절차

구분	물품 공급업체(생산·제조·유통)	수출업체
주요업무	원산지확인서 전달 및 입증서류 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입증서류관리
관리절차	공급물품확인 → 물품 HS확인 → 원산지 결정기준확인 → 원산지 원재료 확인서 작성 → 확인서 전달	수입물품 확인 → 물품 HS확인 →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 입증서류 수집·작성 → C/O 발급 → 발급대장관리(입증서류) → C/O 전달(은행 화환취결)
서류보관 (5년)	- 원산지확인서 입증서류관리 물품거래계약서, 제조공정설명서, 원재료 및 원가내역서(BOM), 운송서류, 원재료 구입증빙자료, 원재료 통관서류 사본 등	- C/O 및 입증서류관리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또는 계약서, 원산지확인서(생산자 수출자 다를 때), 원산지소명서 및 근거서류[제조공정설명서, 원재료 및 원가내역서(BOM), 원재료구입 증명자료,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원재료 통관서류 사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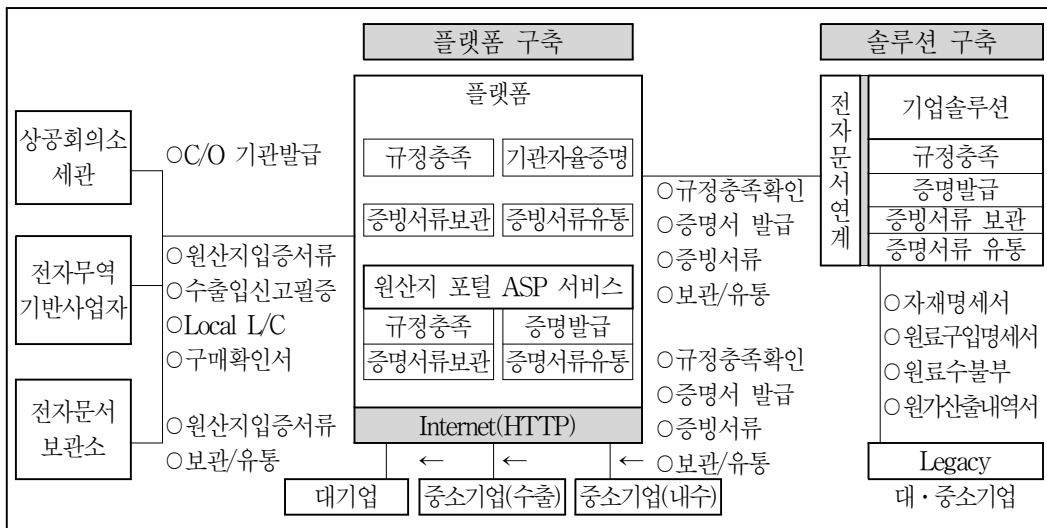
4. e-C/O 관리시스템의 기본 골격

1) 목표시스템

e-C/O 원산지관리 플랫폼 구축에 있어 기본 골격은 크게 원산지 입증서류의 문서정의 및 표준화, 원산지 판정 프로세스의 구현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는 FTA 원산지 판정 D/B 및 자가판정 관리, 입증서류의 중계, uTradeHub³⁾ 및 전자무역보관소

와의 연계, 외부기관 및 사용자 시스템 인터페이스 등의 기능 제공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산지관리 플랫폼은 기업의 ERP와 연계되어 회계정보 및 무역문서와 원산지관리 플랫폼의 D/B를 활용한 원산지충족정보 관리기능과 입증서류 관리·유통, 증명발급관리·보관 등의 기능을 가진 원산지관리 솔루션이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요건을 목표시스템으로 할 때, 그 기본적인 골격은 다음 <표 7>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표 7> 원산지관리 플랫폼과 솔루션의 연계



2) FTA 이행 업무단계별 시스템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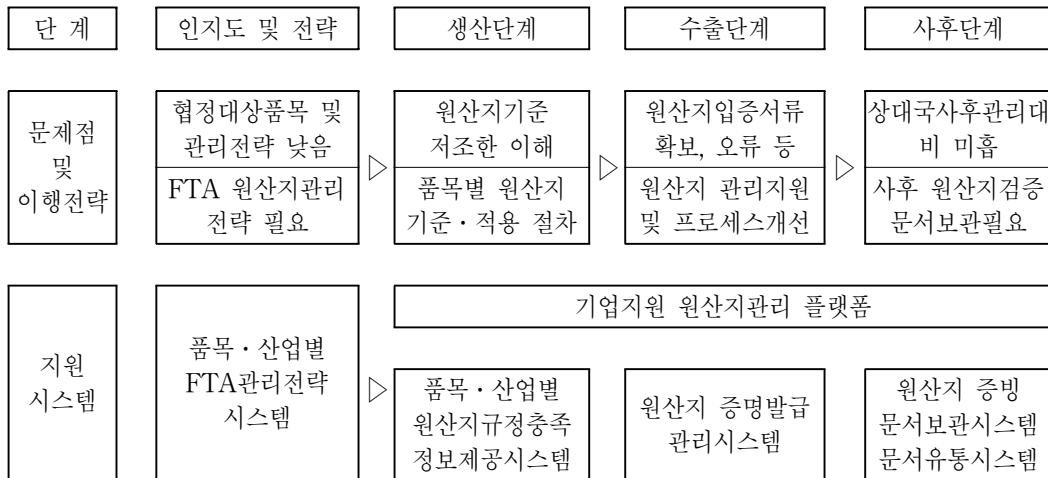
FTA 이행단계별 시스템화 전략은 크게 4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FTA 체결 대상국별/품목별 FTA 활용방법·절차·세율사후 검증 방법 등의 자가진단을 통한 원산지규정 충족 관리시스템의 확립, 둘째 원산지 증명발급/부속문서(원산지확인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공정내역서, 원재료내역서, 부품구입 증명서 등)의 관리시스템의 설계, 셋째 원산지확인서 제출에 대한 각 협정별 검증절차, 증명서류 대응 및 각 원산지 기준(예컨대 부가가치기준은 관세지식, 원가회계, 전자기술 등)을 결합한 통합시스템 구축, 넷째 원산지증명의 검증요구 시 당해 증명서와 부가 서류 제출에 대한 제출 및 보관시스템과 기업 간 상거래 문서(수출용 원재료 원

3) 일반적으로 전자무역플랫폼(uTradeHub)은 인터넷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시스템에 의하여 마케팅 부서에서 결제에 이르는 무역업무 전반을 단절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무역절차별 유관망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신개념의 국가 전자무역 허브를 일컫는다.

산지확인서, 부품업체의 부품구입증명서, 거래명세서 등) 유통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를 도해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아울러 기존 정보시스템의 재활용 및 개발 경험의 활용극대화 또한 요구되는데, 여기에는 수출·입 업체와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등 무역 유관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uTradeHub의 기반 인프라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자원 및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신규 구축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기능이 담보되어야 한다.

<표 8> FTA 이행 업무단계별 시스템화 전략 요약



3) FTA 관리시스템 대상업무의 내역

FTA 관리시스템은 우선 표준화의 기반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그 내역은 원산지 입증서류에 대한 문서정의 및 표준화로부터, 원산지 판정 프로세스의 구현 및 시스템 연계 가이드라인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기업용 솔루션, ASP 서비스 등의 순서로 전개되어야 하는데, 그 내역을 구분하여 순차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단계별 추진방향은 무역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을 중심으로 무역업체에게 가장 효과가 큰 서비스 중심의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기존 정보시스템의 재활용 및 개발경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다만 우선순위에 의한 단계별 추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원산지증명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력은 그 실효성을 제고함에 있어 제반 장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1) 원산지 관리 플랫폼 서비스

첫째 원산지관리 ASP 구축이다. 사용자가 웹을 통하여 접속하여 원산지 관련 서비스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 충족 확인,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및 유통(전자문서 보관소 연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부수하여 uTradeHub 서브 포털로써 사용자는 uTradeHub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제공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원산지규정 충족시스템(정보제공 및 자가판정 시스템) 구축이다. 곧 복잡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업체들의 편리한 종합정보와 비의도적인 우회수출 방지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표준 프로세스 구축 후 업체가 편리하게 자율적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기관발급 연계 및 자율발급 관리시스템) 구축이다. 중소기업의 원산지 자율발급을 위한 각종 서식 및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또한 영세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대장 지원 및 입증·소명을 위한 전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는 향후 상대국 측 요구에 대한 실사근거 자료로도 활용하거나 사전 예방관리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원산지 증빙서류 유통시스템(표준문서 유통 및 ERP 연계시스템)의 구축이다. 이는 대·중소기업의 ERP 시스템의 원산지 증빙자료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 간 원산지 증빙자료의 원산지 관리플랫폼 내에서 그 유통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섯째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시스템(전자문서보관소 연계기능 제공) 구축이다. 원료별 원산지 및 구입가격 등 증빙서류(원산지통보서, 소요량증명, 원산지증명 작성대장 등)의 전자문서보관소와의 연계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공인전자무역문서보관소 연계를 통한 인터페이스, 문서 뷰어 및 보안·인증관리에 대한 실재를 의미한다.

여섯째 기업용 솔루션 연계시스템 구축이다. 그 내역은 기업용 솔루션과 연계하여 FTA 규정에 따른 원산지 규정 충족 확인서비스, 기업용 솔루션의 원산지증명서 신청 접수 및 발급서비스, 기업용 솔루션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신청·접수 및 검색·열람서비스, 기업 간 원산지 증빙자료 유통을 위한 송·수신 서비스 등이다.

(2) 기업용 원산지 관리 솔루션

첫째 원산지규정 충족시스템(정보제공 및 자가판정 시스템) 구축이다. 복잡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업체들의 편리한 종합정보와 비의도적인 우회수출 방지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표준 프로세스 구축 후 업체가 편리하게 자율적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이다. 그 내용은 원산지 자율발급을 위한 각종 서식 및 업무프로세스 지원, Legacy 시스템과 연계하여 원산지증명 발급 관련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 관리기능,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하여 상공회의소, 세관 등 발급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등이다.

셋째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시스템 구축(전자문서보관소 연계기능 제공)이다. 곧 원료별 원산지 및 구입가격 등 증빙서류(원산지통보서, 소요량증명, 원산지증명작성대장 등)의 전자문서보관서 연계 기능과 공인전자무역문서보관서 연계를 통한 인터페이스, 문서뷰어 및 보안·인증 관리시스템의 기반구축 등이다.

넷째 원산지증빙서류 유통 시스템 구축이다. 그 내용은 Legacy 시스템의 원산지 증빙자료를 플랫폼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거래기업의 원산지 증빙자료를 플랫폼을 통하여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계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출·입 신고필증 정보를 원산지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원산지증빙서류 관리시스템의 구축이다. 해당되는 업무내역은 Local L/C, 구매확인서 등 원산지 관련 문서 관리·발급, 거래기업의 기납증, 전자문서 자동 송·수신 관리, 관세사 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출신고 의뢰·관리 및 수출신고서 자료 수신 관리 등이다.

여섯째 범용 Legacy 연계 시스템 구축이다. 기업의 Legacy 시스템과 연계하여 대상 문서의 항목 간 Mapping 관리를 통한 범용 Module 개발로 향후 Legacy 연계를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그 기반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실행시스템은 D/B 간, File과 D/B 간 등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 및 자동화된 전자문서 송·수신 기능 및 송·수신 로그 관리 등이다.

IV. 결 론

C/O 업무 전반을 단절없이 처리할 수 있는 국가 전자무역허브 기반의 FTA 기업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은 당해 전자무역 허브와 연계되어 마케팅·상역·외환·물류·통관·결제 및 글로벌 부문 등 기존 원산지증명 업무전반에 대한 혁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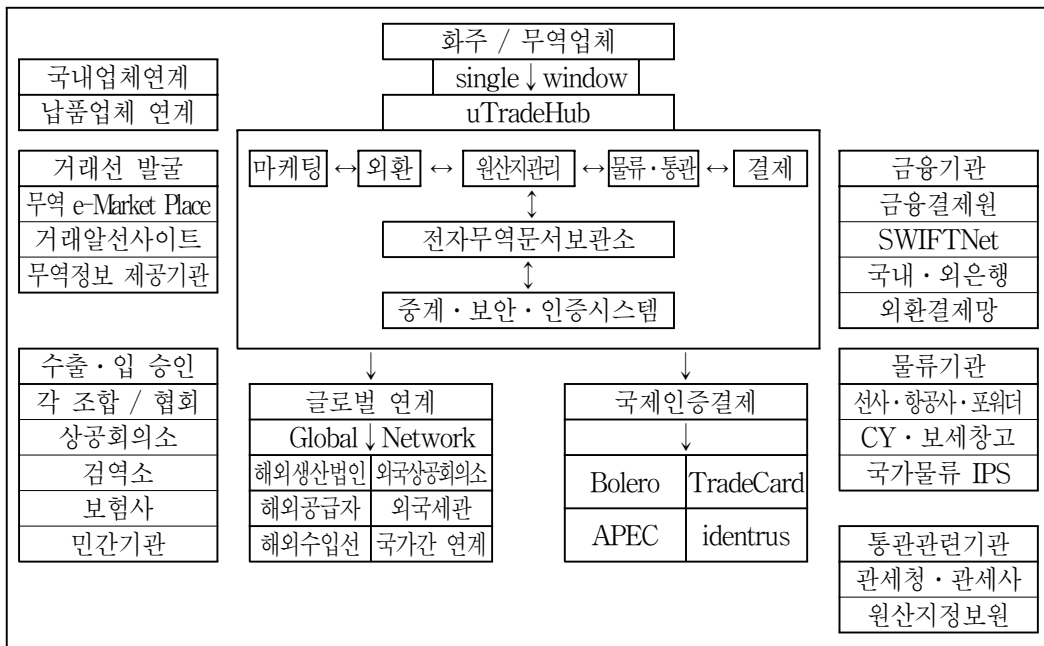
그간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입증서류의 전자적 유통을 위해 정부·무역유관기관·무역업계 등이 주축이 되어 수출입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B/L 등 전자적 유통문서를 다기능의 IPS를 통한 업무처리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는 FTA 기반 국가 무역경쟁력 강화를 실현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

로 간주된다.

현재 uTradeHub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연계망을 활용하여 무역업체에게 단일창구(single window)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e-C/O 및 증빙문서의 유통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단축하여 신속하게 서비스의 확산 및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긴요하고도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음이 사실이다.

본 고는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효과적이고도 실현가능한 e-C/O의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본 골격을 제시하고 이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표 9> FTA 이행 업무단계별 시스템화 전략 요약



결국 논제에 기하여 FTA 기반 전자무역 활성화의 주요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과제별 내역을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⁴⁾

첫째는 원산지 관리플랫폼 구축이다. 그 내용은 i) 원산지 규정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ii) 원산지 증명서 발급 자동화, iii) 원산지 증빙문서 및 정보의 공유·보관을 통한 반복적 업무제거, iv) 무역·물류·통관 관련 문서 및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등이다.

둘째는 다양한 사용자 솔루션의 지원이다. i) 다양한 기술표준 지원을 통한 편리한

4) e-Trade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경과에 대한 상세는 심중석(2009)를 참조.

사용자 환경제공, ii) 대기업을 위한 시스템 연계 및 중소기업에 위한 사용자 솔루션 제공, iii) 중소기업 편의를 최대한 반영한 웹서비스의 제공 등이다.

셋째는 단일창구를 기반한 연계성 확보이다. i) 단일창구 기반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ii) 포털 구축을 통한 사용자의 친숙성 향상, iii) 중소기업까지도 사용가능한 향상된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선결요건 충족을 통해 앞서 제시한 결과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FTA 기업 e-C/O 플랫폼의 미래모형을 제시하면 위 <표 9>와 같다.

참고문헌

- 관세청, “FTA 관세행정지원방안”, 2008. 04.
- 김현중, “왜 FTA를 추진하는가?”, 『통상법률』통권 제61호, 법무부, 2005.
- 김형주, “한-EU FTA,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LG 주간경제』, 2007.
- 박원석, “한-EU FTA협상 주요쟁점”,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제17집 제1호, 2008.
- 이종원 외, “한-EU 추진평가와 과제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8권 제1호, 2008.
- , “EU의 FTA정책과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경상논집』, 제20집 제2호, 2007.
- 서민교, “전자상거래에 관한 한·미 FTA의 평가와 향후 과제”, 『e-비즈니스연구』제9권 제2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8.
- 심종석, “현행 전자무역촉진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 『관세학회지』제10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09. 08.
- 지식경제부, “FTA 활용확대를 위한 원산지 관리 전략세미나”, 2008. 12.
- , “원산지증명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보급전략세미나”, 2009. 06.
- 최창범, “한-미 FTA가 한국산업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제22권 제4호, 2007.
- KIEP, “한국의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2008. 06.
- KITA, “FTA 활용도 설문조사”, 2008. 04.
- KTNET, “한-미 FTA 및 한-EU FTA 규정에 따른 특혜 원산지증명 활용률 조사”, 『KTNET 조사보고서』, 2009.
- SERI, “EU시장내 한·중 수출구조 변화와 시사점”, 『SERI경제포커스』 185-4, 2008.
- ,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Issue Paper』, 2007. 05.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4479호, 1991.12.13.)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705호, 2009.01.30.)

「www.efta.int」

「www.fta.go.kr」

「www.maquilaportal.com」

「www.mofat.go.kr/economic」